

행복한 도민
신뢰받는 의회

제342회 임시회
2015. 9. 11.(금)

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건설소방위원회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18
----------	-----

2015. 9. 11.(금)
건설소방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박병진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15년 8월 24일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8월 25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9월 7일

(제3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박병진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2015년 7월 1일 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」가 개정됨에 따라 재난안전실이 신설되고, 이에 따른 직위 및 명칭이 변경되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‘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’ → ‘안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’
으로 변경(안 제3조제3항)
- 기타 조문 정비 등(안 제1조, 제2조, 제3조제2항, 제4조, 제5조제1항,
제8조제2항, 제9조제2항, 제10조, 제13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: 김학두)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- 재난안전실 신설에 따라 소관부서 조례의 직위 명칭 등을 변경하기
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1조에 따라 시·도 안전관리위원회
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,
- 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」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
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, ‘알기 쉬운
법령 정비기준’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라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바, 재난안전실이 신설되고, 이에 따른 직위 및 명칭이 변경되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,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없 음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없 음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”를 “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1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”를 “각 호의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”를 “각 호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지체없이”를 “지체 없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재난관리”를 “안전정책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단서 중 “잔임 기간”을 “잔여기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해촉”을 “위촉 해제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위원회의 의장이 되며, 회무를 통할한다”를 “그 의장이 되며, 사무를 총괄한다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의하여 당해”를 “따라 해당”으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보상조례”를 “위원에게는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보상 조례」”로 한다.

제13조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</u>에 의한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<u>각호의</u> 사무를 관장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<u>각호의</u> 자가 된다.</p> <p>1. ~ 8.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,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<u>지체없이</u>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<u>재</u></p>	<p><u>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</u>」 제11조에 따른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제2조(위원회의 기능) ----- --<u>각 호의</u>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각 호의</u> -----.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지체 없이</u> 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-----<u>안전정책</u></p>

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.

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, 회무를 통할한다.

② (생략)

제8조(조사·연구) ① (생략)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·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·단체 등에게 연구·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관계기관의 협조요청) ① (생략)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

-----.

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-----

-----잔여기간-----.

② -----
-----위촉
해제-----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-----
-----그 의장
이 되며, 사무를 총괄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조사·연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따라-----

-----.

제9조(관계기관의 협조요청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따라 해당-----

기관·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
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
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0조(수당)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
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
여는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보
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
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운영규정) 이 조례에 규정된
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
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
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.

-----.

제10조(수당) -----
-----위원에게는 「충
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보상 조
례」 -----
-----.

제13조(운영규정) -----

-----해당
-----.